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4. 29 선고 2020가단600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29.

주 문

1.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7. 12. 17. 접수 제862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.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고 E

앞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데,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7. 12. 17.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. 고 E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, 피고들이 고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 원고는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최보원

별지